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7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김주영 · 박균택 · 정태호
이학영 · 박지혜 · 장철민
박상혁 · 박 정 · 문진석
서영교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폭염·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혹한 시 작업 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폭염·한파는 이미 태풍·홍수와 동등한 수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전조치가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태풍·홍수 등 악천후”를 “태풍·홍수·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 ----- ----- ----- ----- ----- ----- ----.
1. <u>태풍 · 홍수 등 악천후</u> , 전쟁 ·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u>태풍 · 홍수 · 폭염 · 한파 등 자연재난</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